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	2013년	3월	20일	조례	제1275호
일부개정	2013년	11월	25일	조례	제1329호
일부개정	2014년	4월	2일	조례	제1349호
일부개정	2015년	6월	1일	조례	제1399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6년	7월	1일	조례	제1498호
일부개정	2016년	11월	3일	조례	제1523호
일부개정	2017년	4월	3일	조례	제1563호
일부개정	2018년	2월	9일	조례	제1640호
일부개정	2018년	12월	26일	조례	제1693호
일부개정	2019년	9월	30일	조례	제1739호
일부개정	2020년	11월	6일	조례	제1846호
일부개정	2022년	1월	13일	조례	제1970호
일부개정	2023년	5월	10일	조례	제2064호
일부개정	2024년	5월	17일	조례	제2168호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문화재 명칭 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2024년	6월	25일	조례	제2179호
일부개정	2025년	7월	1일	조례	제2297호
전부개정	2025년	11월	20일	조례	제233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123조,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오산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소장 및 부서장의 직급 등) 시 본청의 국장 및 부서장의 직급, 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과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본청

제3조(부시장) ① 시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부시장을 둔다.

② 부시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의 지휘·감독

제4조(보좌기관) ① 부시장 직속으로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을 둔다.

② 보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홍보담당관은 시정 및 시책의 공보·홍보에 관한 사항
2. 감사담당관은 시 행정의 감사확인 및 처리와 공무원 비위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복지교육국, 경제문화국, 도시주택국, 시민안전국을 둔다.

제6조(기획재정국) 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를 둔다.

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 및 정책평가, 행정기구 및 정원, 예산, 의회 및 법제사무에 관한 사항
2. 세무행정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
4. 회계·청사관리 및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자치행정국) ① 자치행정국에는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데이터정책과를 둔다.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자치행정·인사·교육 및 직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2. 민원, 여권, 및 가족관계등록 사무에 관한 사항
3. 토지관리, 지적·주소관리에 관한 사항
4. 데이터·통신·통계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복지교육국) ① 복지교육국에는 희망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보육과, 아동복지과, 평생교육과를 둔다.

② 복지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3. 가족·여성·복지 정책에 관한 사항
4. 아동·보육 복지 정책에 관한 사항
5. 교육지원(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제9조(경제문화국) ① 경제문화국에는 민생경제과, 기업일자리과, 문화예술과, 체육과, 도시농업과를 둔다.

② 경제문화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생경제·소상공인지원,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기업지원·일자리정책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관광·국가유산에 관한 사항
4.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5. 농업 및 축산, 반려동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도시주택국) ① 도시주택국에는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주택과, 기후환경정책과를 둔다.

②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2.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3. 건축행정·도시경관 등에 관한 사항
4. 주택정책, 공동주택, 주거복지,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5. 환경정책·환경지도·대기개선 및 에너지 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시민안전국) ① 시민안전국에는 안전정책과, 교통정책과, 스마트교통안전과, 도로과를 둔다.

② 시민안전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관리총괄·조정·통제에 관한 사항
2. 교통정책, 대중교통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구축 및 스마트통합운영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건설행정, 도로계획, 도로건설·정비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보건소)

제12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③ 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를 둔다.

제13조(소장) 보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4조(소관사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4장 사업소

제15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③ 환경사업소에는 자원순환과, 수도과, 하수과, 도시공원과, 하천녹지과를 둔다.

제16조(소장 및 관장) 사업소에 소장 또는 관장을 두며, 소장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7조(소관사무) ① 환경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청소행정,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
2. 수도관리·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
3. 하수행정·하수관리·하수처리·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4. 공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하천관리 및 산림녹지에 관한 사항

② 중앙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도서 및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 ③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차량등록·검사에 관한 사항
 2. 무단방치차량에 관한 사항
 3.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제5장 하부행정기관(동)

제18조(설치) 법 제3조제4항 및 제7조제1항·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

제19조(직무) 동은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반 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0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장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1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904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883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1명

제22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3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5. 11. 20 조례 제2330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오산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② 「오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제3항 중 “경제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재정국장, 경제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③ 「오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④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제4항 중 “복지교육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을 “복지교육국장,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⑤ 「오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제3항 중 “국장·소장·홍보담당관·감사담당관·기획예산담당관”을 “국장·소장·홍보담당관·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⑥ 「오산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⑦ 「오산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⑧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제2항 중 “국·소장, 기획예산담당관”을 “국·소장”으로 한다.

⑨ 「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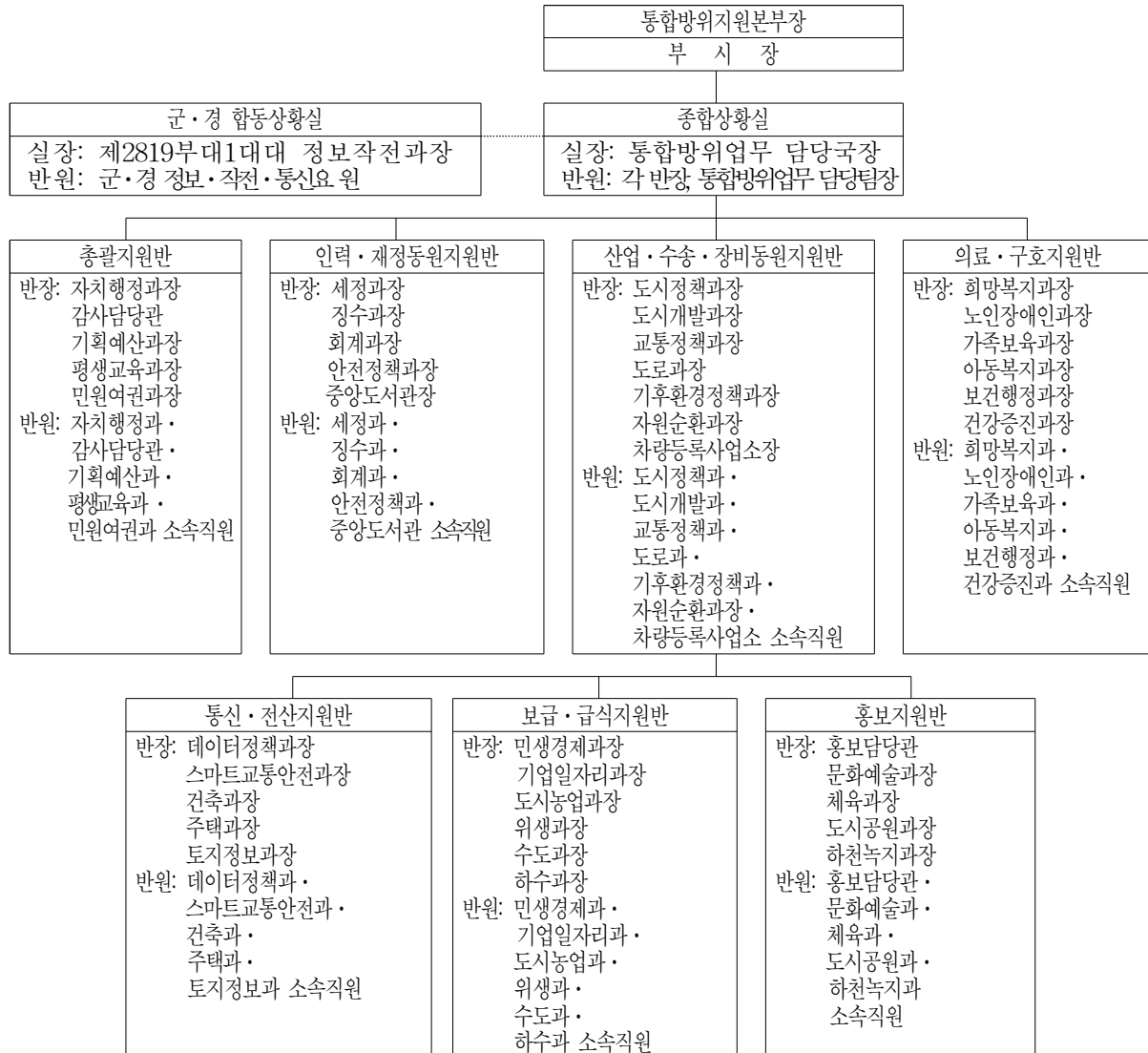
⑩ 「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을 “기

획 예산과장”으로, “지역경제과장”을 “민생경제과장”으로 한다.

⑪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오산시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⑫ 「오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⑬ 「오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정보통신과”를 “데이터정책과”로 한다.

⑭ 「오산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제2항 중 “정보통신과장”을 “데이터정책과장”으로 하고, 제3항중 “정보통신과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장”을 “데이터정책과장”으로 한다.

⑮ 「오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재난 대응 및 수습 주관부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재난수습 주관부서
(중략)	(중략)	(중략)
미래창조과학부	1. 우주전파 재난 2. 정보통신 사고 3.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 데이터정책과 데이터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	1. 경기장에서 발생한 사고 2.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체육과 문화예술과
(중략)	(중략)	(중략)
농림축산식품부	1. 가축 질병 2. 저수지 사고	도시농업과 도시농업과
산업통상자원부	1.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2. 원유수급 사고 3.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 4. 전력 사고 5.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기후환경정책과 - - 기후환경정책과 -
(중략)	(중략)	(중략)
환경과	1.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2.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3.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4.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5. 황사	기후환경정책과 수도과 기후환경정책과 - 안전정책과
(중략)	(중략)	(중략)
금융위원회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민생경제과
(중략)	(중략)	(중략)
산림청	1. 산불 2. 산사태	히천녹지과 히천녹지과

비고: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오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관장 사무를 기준으로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4 ~7]의 “환경과”를 “기후환경정책과”로, “청소자원과”를 “자원순환과로”, “정보통신과”를 “데이터정책과”로, “지역경제과”를 “민생경제과”로 한다.

⑯ 「오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정보통신과장”을 “데이터정책과장”으로 한다.

⑰ 「오산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역경제과”를 “기업일자리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기업일자리과장”으로 한다.

⑱ 「오산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문화예술과장, 체육관광과장, 희망복지과장, 환경사업소장, 환경과장, 지역경제과장, 농축산정책과장”을 “문화예술과장, 체육과장, 희망복지과장, 환경사업소장, 기후환경정책과장, 민생경제과장, 도시농업과장”으로 한다.

⑲ 「오산시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제2항 중 “체육관광과장”을 “체육과장”으로 한다.

⑳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의 가정배출 소량 폐기물 마대 중 “청소자원과”를 “자원순환과”로 한다.

㉑ 「오산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제3항 중 “환경과장”을 “기후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

[별표 1]

보건소 등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2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오산시보건소	오산시 경기동로 59	오산시 일원
오산시건강생활지원센터	오산시 문헌공로 45	오산시 일원

[별표 2]

사업소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5조 관련)

명 칭	위 치
오산시환경사업소 오산시중앙도서관 오산시차량등록사업소	오산시 오산천로 72 오산시 운암로 85 오산시 청학로 98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

구분	일반직	별정직·정무직
비율	99% 이상	1% 이내

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4]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2% 이내	6% 이내	23% 이내	32% 이내	29.6% 이내	8.2% 이상

비고 :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3% 이내	97% 이상	6% 이내	93% 이내

비고 :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율	3% 이내	30% 이내	40% 이내	20% 이내	7% 이상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5]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구 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 기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904	904				
정무직 계	1	1				
시 장	1	1	-	-	-	-
일반직 계	902	902				
3 급	1	1	-	-	-	-
4 급	8	6	-	1	1	-
5 급	50	29	2	4	7	8
6급 이하 계	843	843				
별정직 계	1	1				
5급 상당	-	-	-	-	-	-
6급 상당 이하 계	1	1				